

인사발령을 위한 첨부서류(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번호	발령 구분	첨부서류	비고
1	신규채용	기본증명서 1통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결격사유 조회 결과 출력물,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결격사유조회회보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이 발행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을 말한다.
		채용 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를 말한다. 다만, 「공무원 임용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갈음한다.
		신원조사회보서 1통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원진술서 2통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진 3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티미터) 사진을 말한다.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사본 1통 경력증명서 1통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승진 일반승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진	일반승진시험 합격통지서 1통	
		그밖의 승진	승진순위표 1통	
3	전직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전직시험 합격통지서 1통	
			연구직렬 및 과학기술직렬의 해당 분야 확인서 1통	「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면직	의원면직	사직원서(자필) 1통	
		직권면직	직권 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직권 면직 의견·동의 의결서 1통 처분사유 설명서 1통	직권 면직 의견·동의 의결서는 「공무원 징계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당연퇴직	판결문 사본 등 당연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강임		강임 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개편 또는 폐지, 예산 감소의 관계 서류 1통 처분사유 설명서 1통	처분사유 설명서는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6	징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 1통	징계의결서는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하고, 징계 처분등의 사유설명서는 같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7	추서		공적조사서 1통 사망진단서 1통 사망경위서 1통	
8	휴직 및 복직	질병휴직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처분사유 설명서 1통	진단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말한다.
		그밖의 휴직	입영통지서 사본 등 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처분사유 설명서 1통	처분사유 설명서는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복직	진단서 등 복직 사유를 증명할	질병휴직자의 복직 등 복직 사유의 확

			수 있는 서류 1통	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9	전입 또는 전출	전입 또는 전출 동의서 1통		
10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 1통		
11	시보임용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 1통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만 첨부 한다.
12	전보	신원조사회보서 1통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 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원진술서 2통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 한다.